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79
----------	------

제출일자 : 2006. 11.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여 나가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방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방재단의 임원 및 임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다. 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안 제7조).
- 라. 방재단의 활동사항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9조).
- 마.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안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 제2항).

## □ 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219,550천원(별첨)

##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6. 10. 25. - 2006. 11. 15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 추진 지침(표준안 포함)(경기도지사, 2005. 9.12)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06.10.16)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은 안산시내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⑧동지역자율방재단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 단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안산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안산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및 지원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안산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재난관리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담당 김용배
	담당자 성명·전화	오동원 (481-2119)

#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 ○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가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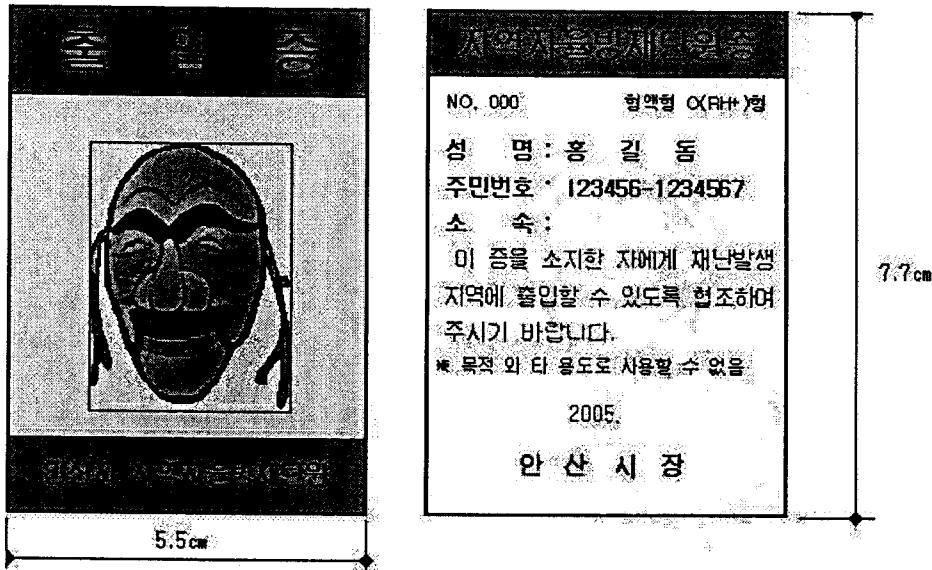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출 입 증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중 “단장1인, 간사 1인”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삭제하며,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안산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른”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집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7항으로 한다.

##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4조(구성)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과 반수 참석에 참석단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p> <p>③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p> <p>④~⑤(생략)</p> <p>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u>구성할 수 있다.</u></p>	<p>제4조(구성) ①-----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p> <p>②-----&lt;삭제&gt;-----</p> <p>-----</p> <p>-----</p> <p>----- 위촉한다.</p> <p>③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p> <p>④~⑤(원안과 같음)</p> <p>⑥-----</p> <p>----- 구성한다.</p>
<p>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생략)</p> <p>②단장은 「안산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p> <p>④(생략)</p> <p>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원안과 같음)</p> <p>② 단장은 -----&lt;삭제&gt;-----</p> <p>-----</p> <p>-----</p> <p>③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p> <p>④(원안과 같음)</p> <p>⑤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8조(소집)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집을 할 수 있다.</p> <p>②~③(원안과 같음)</p>
<p>제9조(활동 및 지원 등) ①~②(생략)</p> <p>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p> <p>④~⑦(생략)</p> <p>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9조(활동 및 지원 등) ①~②(원안과 같음)</p> <p>&lt;삭제&gt;</p> <p>-----</p> <p>-----</p> <p>-----</p> <p>③~⑥(원안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음)</p> <p>⑦-----</p> <p>-----</p> <p>----- 반영할 수 있다.</p>